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김세현, 조윤영, 김지수, 이동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철(국선)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약 10년 전 대구 동구 소재 C재활원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이 2022. 9. 13.경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고 싶다고 요청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야간 무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



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은 '제30조 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제1호), 혹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제2호)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



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해석에 관하여도 앞서 본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관련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사실 진술과, 피해자의 배우자 E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① 상담확인서, 피해자 영상녹화 CD, 녹취서 작성보고 및 각 녹취서, 피해자의 진술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3, 4, 5, 8, 17, 20), ②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진술분석결과요지,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피해자 진술 내용 정리), 112 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7, 15, 16,



18, 19, 28) 중 피해자 진술 부분, ③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에 대하여 각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의 신청으로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2025. 9. 3.자, 2025. 11. 5.자, 2026. 1. 14.자 각 공판기일 증 인소환장이 모두 송달되지 않은 점, ② 검사가 2026. 1. 15.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주 소 및 휴대전화를 모두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소보정서를 바탕으로 경산경찰서, 의정부경찰서, 부산진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 였는데, (i) 경산경찰서, 의정부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소재불명(피해자에 대한 소재탐 지 불가)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ii) 부산진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모텔에 투숙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 대 하여 재차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소지에 피해자가 아닌 베트 남 외국인 여성이 거주중이며, 해당 여성이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확인된 점, ③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 ②항에서 확인된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모텔 이고(검사의 2026. 4. 27.자 주소보정서 참조), 그 외에 피해자의 소재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역시 2025. 4. 15. '피해자 측과 는 2024. 4.경 마지막으로 연락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 였던 점, ⑤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결국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 소환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개연성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위 각 증거들 및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의 법정진술은 각각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2, 3, 4, 5, 8, 17, 20, 25와, 증거목록 순번 6, 7, 19, 28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증거목록 순번 25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반면,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7, 27).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대신문하여 탄핵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3) 피해자의 배우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아침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 등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이후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했



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는 것인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23, 27~28, 49~50쪽),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E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2022. 9. 13.경 이후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제주도에 유기한 채 서울로 돌아갔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기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나름대로 변소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2016년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C재활원에서 생활할 때부터 서로 사귀는 사이로 당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일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영철 _____

 판사 전상욱 _____

 판사 이보경 _____